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511650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이경수, 전병주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3,251원과 그 중 32,113,817원에 대하여 2021. 5. 20.부터 2021. 7.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22. 6.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23. 접수 제750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8. 1. 2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에 기재 2017. 1. 26.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후 피고 회사는 2020. 9. 28.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21. 5. 20. D은행에 32,113,817원(원금 31,500,000원, 이자 613,8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176,700원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472,734원이다.

바. 한편 피고 B은 2020. 2.경 피고 C과 이혼을 하였는데, 2020. 6. 2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32,763,251원(= 대위변제금 32,113,817원 + 추가보증료 176,700원 + 법적절차비용 472,73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2,113,817원에 대하여 2021. 5.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인 2021. 7. 2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의 전부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분할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자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5. 21. 위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성격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피고 C은 2020. 1. 30.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B와 피고 C은 2020. 2. 10.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산분할의 상당성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와 피고 C은 1988. 8. 9.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20. 2.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약 3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는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여 재산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의이혼 당시 피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2,500,000원과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의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재산분할에 포함된 부양적 · 위자료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별지